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2일, 한정애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1. 1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한정애)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음.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를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곽현준)

가. 제원통보시 배터리 정보를 포함(한정애의원안)

현행 자동차 제원표에 관하여 현행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제작자명, 형식, 중량 등의 제원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한정애의원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전기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는 경우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이 포함된 내용의 제원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현행 자동차 제원에 배터리와 관련하여 정격전압·용량, 형식(배터리 모델명), 개수 등 기본적인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배터리 셀의 제조사 및 형태 등 세부적인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중이며 2024년 11월 시행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한편, 상품명(제품명)의 경우 제작사가 부여하는 관리번호 등으로 소비자에 공개할 필요가 낮다는 의견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